

# 국내시장복귀계좌 핵심(요약) 설명서

소비자보호검토편 제26-0460호 (심의일: 2026.04.09)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는 RIA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설명은 RIA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 특징: 2025년 12월 23일 보유중(결제일 기준)인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대체) 후 매도하여 결제일 이후 RIA에서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 후 RIA 투자가능상품\* 매매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매도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단,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 시 최종 공제비율이 차감됨)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중개형 ISA
계약형태	위탁매매 계약, 자동환전 계약	위탁매매 계약
투자방법	투자자가 직접 종목 선택, (해외주식은 매도만 가능 국내주식은 매수·매도 가능)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
투자가능상품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	상장주식, 펀드, ETF, ELS, 채권, RP

- ※ 국내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리츠 포함, DR 제외)
- ※ 국내주식형펀드: 설정, 설립 1개월이 경과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단,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자산[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 DR, 해외상장 ETF 및 ETN)]이 편입되지 않을 것

- RIA에서는 국내에 상장/설정된 상품 중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상장 주식을 기초로 한 상품 및 펀드에 한해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 RIA에서 매매가능한 국내 상장 ETF의 경우 **기초 지수 또는 운용 전략에 따른 자산 재조정(구성 종목 및 종목별 비중 등)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매 가능한 ETF 종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 손실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각 금융회사별로 **인당 하나의 RIA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등에 RIA를 개설하더라도, **모든 RIA의 납입한도 합계액은 총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초공제율**: RIA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26년내 매도 시기별로 차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6.5월까지 100%, '26.6~7월 80%, '26.8~12월 50% 공제 ]

- '26.1.1일부터 '26.12.31일까지 모든 금융회사의 RIA 외 계좌(연금계좌, ISA 등 모든 계좌)에서 **결제한 해외주식 등\*의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서 세제혜택은 감소**됩니다.

\*해외주식 등

- 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 DR, 해외상장 ETF 및 ETN
- ② 해외주식대체자산: 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해외주식(①)에 투자하는 펀드

\*\*순매수 시점별 가중치 차등 적용: '26.5월까지 100%, '26.6~7월 80%, '26.8~12월 50% 반영

- **해외주식 등 재매입 시 공제율**: 해당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2026년 한해동안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최종 공제비율이 줄어듭니다.**

$$[ \text{조정비율} = 1 - \frac{\text{RIA 외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text{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

- **최종공제율**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공제율이 0%보다 작은 경우 최종 공제율은 0%로 간주됩니다.

$$[ \text{기초공제율} \times \left( 1 - \frac{\text{RIA 외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text{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right) ]$$

\*해외주식 등의 매수·매도는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

- 2026년 한해동안 상속 및 증여로 해외주식 등 세제혜택 축소 대상 상품(별첨 2참고)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2026년 세제혜택 축소 대상 상품 순매수 내역에 포함(상속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 등의 가액은 상증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됩니다.
- RIA로 직접 타사대체 입고 시, 입고 전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 금액과 당사가 적용하는 선입선출법 기준 양도소득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 적용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병합/분할 등 입고 권리를 제외한 옵션배당/주식배당/유무상 주 입고는 모두 입고 즉시 자동으로 근거계좌로 출고됩니다. (단, 권리 입고 후, 근거계좌 출고 시, 선입선출로 계산되어 취득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RIA 권리 자동대체 시, 권리 입고 시 단가가 아닌 '평균단가'로 입고되어, 추후 해당 종목의 권리로 인한 양도세 및 배당소득세 계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납입일로부터 1년 내 원화/외화 입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된 납입원금(해외주식 매도대금)은 1년 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납입 원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투자 수익금은 횡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1항 제2호]
- 의무보유 기간(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납입 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되며 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5항]
- 중도 해지 시 RIA는 위탁종합계좌로 전환되며,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주식 매도 시 환전은 결제일 당일 가환율로 환전 후 오전 9시 10분경 당사에서 고시하는 정산환율로 재계산하여 차액은 16시경 고객님의 계좌에 환급 또는 징수처리 됩니다(국내 영업일 기준). 가환율로 환전 후 정산처리 시, 원화에수금이 부족한 경우, 반대매매가 없는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변제시까지 연체료 연0% 부과). 결제일 당일 가환전 완료 시까지 해외주식 매도금액으로 국내주식 등 매수가 불가합니다.
- 해외주식 거래에서는 증권 매매손익과 함께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RIA 세제혜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과세관련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RI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의거하며 운영되며, 사후 관리 및 세액 추징에 관한 상세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국세청 지침을 따릅니다.

- 거래 전 국내증권 및 해외주식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거래 전 국내 주식 거래설명서, 외화증권 거래설명서 및 펀드별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민원 · 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 Q. 2025년 12월 23일에 산 해외주식도 포함되나요?

A. 본 제도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결제되어 보유중인 해외주식 수량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주식의 경우 **기준일인 2025년 12월 23일에 체결된 해외주식은 현행 해외주식 결제제도 상 결제일이 2025년 12월 26일이기 때문에, 해당 매수분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타 증권사에 있는 해외주식을 대체입고 후 매도해도 되나요?

A. 타사 해외주식 대체입고 시, **반드시 출고 증권사로부터 'RIA 입고 가능 수량'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타사 출고분은 RIA 입고가 제한**됩니다.

참고로 **입고 전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금액과 **당사가 적용하는 선입선출법** 기준 양도소득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 적용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수익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A. RIA로 입금할 수 있는 해외주식매도대금의 총합이 5,00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그 2,000만원에 대한 공제율(100~50%)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매도대금'과 '양도차익'의 의미를 혼동하여 추후 세금이 청구되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투자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A. RIA에서 **해외주식은 매도만 가능하며, 국내자산의 경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됩니다. 매매 가능한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 의무 보유 기간의 산정 및 추징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해당 법령 및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 시점의 확정된 법령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기초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A. RIA 가입 후 해외주식 매도 시기별로 차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해외주식을 2026년 5월까지 매도 시 100%, 6~7월 매도 시 80%, 8~12월 매도 시 50%가 공제 됩니다.

예)

매도 및 납입 시기	'26. 5 월까지	'26. 6~7 월	'26. 8~12 월
적용 공제율	100%	80%	50%
해외주식 양도차익	3,000 만원	3,000 만원	3,000 만원
세금 공제 금액	3,000 만원	2,400 만원	1,500 만원
최종 과세 대상	0 원	600 만원	1,500 만원

◆ Q. RIA 가입 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다시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다시 매수하면(순매수), 해당 금액만큼 RIA의 공제 비율을 깎는 비례 차감 로직이 적용됩니다.

예) 2026년 5월 내 가입자(기초 공제율 100%)가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산 경우

- RIA 납입액(해외주식 매도액): 5,000 만원
- RIA 외 계좌 해외주식 순매수액: 2,500 만원
- 최종 공제율 계산:  $100\% \times \left(1 - \frac{2,500\text{만원}}{5,000\text{만원}}\right) = 50\%$
- 결과: 최초 100% 공제 대상이었으나, 재매수로 인해 50%만 공제

◆ Q. 납입금액 인출이 가능한가요?

A.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된 납입원금(해외주식 매도대금)은 1년 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납입 원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국내자산의 투자 수익금은 횡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 RIA 운영 현황

- 최초 납입 원금: 5,000만원(1년 유지 의무)
- 국내 주식 투자 후 평가액: 5,700만원
- 인출 가능금액: 700만원(원금 5,000만원을 제외한 수익금은 의무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출금 가능)

## ■ 투자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유동성 위험

- RIA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의무보유 기간 도래 전 납입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 시 비용발생	중도해지 가능
해당여부		V	

##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제출 받아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회사는 법령,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격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 민원 · 상담 · 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com](http://www.kiwoom.com)), 모바일(영웅문S#) 또는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설명서

소비자보호검토편 제 26-0460 호 (심의일: 2026.04.09)

◆ 이 설명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6(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이 설명서에 기재된 세제 혜택, 가입 요건 및 사후관리 사항은 상기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세청 집행지침(유권해석 포함)을 준용합니다.

◆ 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 의무 보유 기간의 산정 및 추징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해당 법령 및 관계 기관의 최신 지침에 따릅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의 개정 또는 국세청의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내 사항의 차이에 대해서는 최종 공포된 법률이 우선하며, 고객님의께서는 가입 시점의 확정된 법령을 반드시 재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설명서는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상품의 주요 특성, 투자위험 및 불이익사항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구분	내용
상품명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하 "해당계좌")
특징	2025년 12월 23일 보유중(결제일 기준)인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대체) 후 매도하여 결제일 이후 RIA에서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 후 RIA 투자가능상품* 매매 시 <b>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매도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 제공</b> (단,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 시 최종 공제비율이 차감됨) <small>*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small>

가입 불가 조건	<b>비거주 내국인, 외국인 및 법인, 14 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개설불가</b> ※ 단, 14 세 이상 19 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ID를 통한 개설 가능
의무 투자 기간	<b>1년</b> ※ 매도대금이 결제 및 환전 된 날을 납입일로 하여, 해당 납입일로부터 1년
납입한도	해외주식 매도 기준가격 5 천만원 ※ 기준가격은 결제일자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계산
가입 대상 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 <b>해외주식은 매도만 가능(미국만 가능)</b>

※ 국내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리츠 포함, DR 제외)

※ 국내주식형펀드: 설정, 설립 1 개월이 경과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국내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단,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자산[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 DR, 해외상장 ETF 및 ETN)]이 편입되지 않을 것

※ RIA 에서는 국내에 상장/설정된 상품 중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상장 주식을 기초로 한 상품 및 펀드에 한해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 RIA 에서 매매가능한 국내 상장 ETF 의 경우 **기초 지수 또는 운용 전략에 따른 자산 재조정(구성 종목 및 종목별 비중 등)**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매 가능한 ETF 종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I. 상품의 세부내용

### 1. 입고

1) 해당계좌에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결제되어 보유한 해외주식 수량만 입고가 가능**합니다.(소수점 잔고 입고 불가)

2) 해당계좌로의 대체 출고는 **미국주식(DR, ETF, ETN 포함)만 가능**합니다.

3) **대체 출고는 동일명의 근거계좌로만 가능하며, 대체 출고 가능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10시**입니다.

4) **입고 순서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매입한 날짜의 잔고부터 입고 처리됩니다.

5) 해당계좌로 입고 가능한 주식 수량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Min [ '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결제기준) A사 주식의 수량 입고, 입고 직전 보유 중인 A사 주식 수량

예)

가. '25.12.23. A 사 주식 100 주 보유하였다면, 그 이후 50 주를 매도하고, 다시 100 주를 추가 매수하여 150 주가 되었더라도 입고가 가능 주식수는 100 주

나. '25.12.23. A 사 주식 100 주 보유하였다면, 그 이후 100 주를 매수하고, 50 주를 매도하여 150 주가 되었더라도 입고가 가능 주식수는 100 주

다. '25.12.23. A 사 주식 100 주 보유하였다면, 그 이후 50 주를 매도하여 50 주가 된 경우 입고가 가능 주식수는 50 주

6) 해당계좌에 입고한 **해외주식에 대해 매도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회사의 대체출고 가능 시간 내에서 언제든지 재출고가 가능**합니다.

7) 해당계좌에서 해외주식 매수는 불가하기 때문에, **입고 후 매도 한도 초과로 해당계좌에서 매도하지 못한 해외주식은 위탁종합계좌로 출고하여 매도**가 가능합니다.

8) **대체출고 가능시간 외에는 출고가 불가**하오니 한도초과 수량은 반드시 대체출고 가능시간에 확인하시어 매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소수점 잔고에서 온주전환 처리된 수량의 경우 전환 당일에는 당사 계좌간 대체가 불가능하며, 익영업일부터 가능**합니다.

10) **합병/감자/액면병합/액면분할/회사분할/시장전환 권리 종목은 기준일~권리지급시 까지 당사 계좌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2. 해외주식 매도 및 매도대금의 인출

1) 해당계좌에서 **해외주식의 매수는 불가**합니다.

2) 해당계좌에서 매도된 해외주식의 매도대금은 **매도대금이 결제되어 원화로 환전된 날을 납입일**로 하여, **해당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인출 가능 여부는 납입일 단위로 판단**

예) '26.3.5. 원화환전 결제액 1 천만원 납입 → '27.3.5 부터 1 천만원 출금 가능

3) 해당계좌의 의무 보유 기간(1년)은 자금 납입일(해외주식 매도대금이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 납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금액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면 해지로 간주되어 RIA 내 해외주식 매도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이 취소**

## 3. 양도소득금액의 가계산

1) 해당계좌에 제공되는 **양도소득금액 가계산 기능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됩니다.

2) 해당기능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설정하신 조건(매도단가, 매도수량)에 따라 예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므로, 체결 금액에 따라 변경되는 실제 양도소득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상 양도소득금액은 적용 환율 차이 및 권리 등의 사유로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에 사용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해당계좌로 직접 타사대체 입고 시, **입고 직전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 금액과 회사가 적용하는 선입선출법 기준 양도소득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 적용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위의 사유로 해당계좌에서 해당 종목의 매도를 원치 않으신 고객님께서서는 회사의 대체출고 가능 시간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0시) 내에 위탁종합계좌로 출고하여 매도가 가능합니다.

6) 예상 양도소득금액은 고객님의 설정하신 조건에 따라 단순 양도차익만을 계산한 값으로 세제 혜택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계좌의 세제 혜택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양도소득 금액이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 25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예상 양도소득 금액에서 계산된 양도차익 전부가 반드시 해당계좌의 세제 혜택 대상 금액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한도금액의 관리

1) 해당계좌의 한도금액 조회는 08:00 - 09:00 사이에 불가합니다.

2) 해당계좌의 해지 및 한도금액 정정은 08:00 - 09:00 사이에 불가합니다.

3) **각 증권사별 해당계좌 한도액의 합계금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고객님의께서는 한도금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도 한도는 매도 기준가격\* 5 천만원 이하 분 까지만 매도가 허용됩니다.

\*기준가격은 매도주문 전일의 종가 및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계산

예)

'26년 3월 2일 해외주식 매도주문을 체결한 경우, 해당 종목의 2026년 3월 1일 종가 및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으로 한도 차감

- 2026년 3월 1일 A 주식 종가 1 달러, 기준환율 1,000원
- 2026년 3월 2일 A 주식 100주, 매도체결 2달러, 기준환율 1,001원
- 2026년 3월 2일 A 주식 100주 매도체결로 인한 한도 차감액
- $100 \times 1(3월1일\ 종가) \times 1,000(3월1일\ 기준환율) = 100,000원$

## 5. 매매 수수료

1) 미국주식 기본수수료(온라인: 0.25%, 오프라인: 0.50%)

\*국가별 세금 및 기타수수료 홈페이지 참고

2) 국내주식(ETF 포함) 기본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만 부과(KRX 0.0036396%, NXT 0.0031833%)됩니다.

단, 26.12.31 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이후 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상품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6. 해지

해당계좌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위탁종합계좌로 전환되며, **중도 해지시에는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Ⅲ. 발생가능한 불이익

### 1. 계좌개설 및 한도

각 금융회사별로 인당 하나의 해당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등에 해당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모든 해당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은 총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공제비율의 조정

1) **기초 공제율**: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26 년내 매도 시기별로 차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6.5 월까지 100%, '26.6~7 월 80%, '26.8~12 월 50% 공제 ]

예)

매도 및 납입 시기	'26. 5 월까지	'26. 6~7 월	'26. 8~12 월
적용 공제율	100%	80%	50%
해외주식 양도차익	3,000 만원	3,000 만원	3,000 만원
세금 공제 금액	3,000 만원	2,400 만원	1,500 만원
최종 과세 대상	0 원	600 만원	1,500 만원

2) 26.1.1 일부터 '26.12.31 일까지 모든 금융회사의 RIA 외 계좌(연금계좌, ISA 등 모든 계좌)에서 결제한 해외주식 등\*의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서 세제혜택은 감소\*\*됩니다.

\*해외주식 등

- 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 DR, 해외상장 ETF 및 ETN
- ② 해외주식대체자산: 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①)에 투자하는 펀드

\*\*순매수 시점별 가중치 차등 적용: '26.5 월까지 100%, '26.6~7 월 80%, '26.8~12 월 50% 반영

**3) 해외주식 등 재매입 시 공제율:** 해당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2026년 한해 동안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최종 공제비율이 줄어듭니다.

$$\text{조정비율} = 1 - \frac{\text{RIA 외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text{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4) 최종공제율:** 최종공제율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공제율이 0%보다 작은 경우 최종 공제율은 0%로 간주됩니다.

$$\text{기초공제율} \times \left( 1 - \frac{\text{RIA 외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text{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right)$$

※ 해외주식 등의 매수·매도는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

예)

2026년 5월 내 가입자(기초 공제율 100%)가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산 경우

- RIA 납입액(해외주식 매도액): 5,000 만원
- RIA 외 계좌 해외주식 순매수액: 2,500 만원
- 최종 공제율 계산:  $100\% \times \left( 1 - \frac{2,500\text{만원}}{5,000\text{만원}} \right) = 50\%$
- 결과: 최초 100% 공제 대상이었으나, 재매수로 인해 50%만 공제

**5) 2026년 한해동안 상속 및 증여로 해외주식 등 세제혜택 축소 대상 상품(별첨 2참고)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2026년 세제혜택 축소 대상 상품 순매수 내역에 포함(상속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 등의 가액은 상증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됩니다.**

### 3. 권리제한

#### 1) 해외주식 권리 업무

① **합병/병합/분할 등 입출고 권리를 제외한 옵션배당/주식배당/유무상 주 입고는 모두 입고 즉시 자동으로 근거계좌로 출고**됩니다. (단, 권리 입고 후, 근거계좌 출고 시, 선입선출로 계산되어 취득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② 배당금 입금 등 입금 권리의 경우, RIA로 지급됩니다.

③ RIA 권리 자동대체 시, 권리 입고 시 단가가 아닌 '평균단가'로 입출고되어, 추후 해당 종목의 권리로 인한 양도세 및 배당소득세 계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주식 권리는 일반 위탁계좌와 동일하게 해당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입출고 제한이나 자동대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4. 입출금고 제한

1) 납입일로부터 1년 내 원화/외화 입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2) 해외주식의 매도대금을 제외한 외화출금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예: 외화 예탁금이용료 등) 단, 결제일 당일 매도금액 환전 처리 시간대에는 납입금액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외화 이체가 불가합니다.

#### 5. 중도 인출(의무보유기간)

원칙: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된 납입원금(해외주식 매도대금)은 1년 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납입 원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투자 수익금은 횡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1항 제2호]

예)

RIA 운영 현황

- 최초 납입 원금: 5,000만원(1년 유지 의무)
- 국내 주식 투자 후 평가액: 5,700만원
- 인출 가능금액: 700만원(원금 5,000만원을 제외한 수익금은 의무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출금 가능)

#### 6. 감면세액 추징(의무 위반시 불이익)

1) 의무보유 기간(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납입 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이 다음과 같이 환수됩니다

- ① 추징대상: RIA를 통해 감면받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전액
- ② 추징금액 = 감면세액 + 이자상당 가산액
- ③ 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5항]

2) 추징 제외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등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의무보유기간인 1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7. 중도해지

중도 해지 시 해당 계좌는 위탁종합계좌로 전환되며,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8. 해외주식 매도 자동환전 및 국내주식 등 매수

- 1) 해외주식 매도 시 환전은 가환율로 환전 후 오전 9시 10분경 당사에서 고시하는 정산환율로 재계산하여 차액은 16시경 고객님의 계좌에 환급 또는 징수처리 됩니다(국내 영업일 기준).
- 2) 가환율로 환전 후 정산처리 시, 원화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반대매매가 없는 기타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변제시까지 연체료 연0% 부과).
- 3) 결제일 당일 가환전 완료 시까지 해외주식 매도금액으로 국내주식 등 매수가 불가합니다.

## 9. 양도소득금액 계산

RIA로 직접 타사대체 입고 시, 입고 전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금액과 당사가 적용하는 선입선출법 기준 양도소득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 적용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외화증권의 거래

외화증권 거래에서는 증권 매매손익과 함께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1. 과세제도의 변동

RIA 세제혜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과세관련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I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의거하며 운영되며, 사후 관리 및 세액 추징에 관한 상세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국세청 지침을 따릅니다.

## IV. 투자위험

### 1. 투자위험 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회사는 투자위험 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계좌의 경우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매우 높은 위험 등급을 지닌 상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2. 유동성위험

해당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의무보유 기간 도래 전 납입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V.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제출 받아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회사는 법령,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격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VI.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VII.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com](http://www.kiwoom.com)), 모바일(영웅문 S#) 또는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RIA 투자 가능 상품 ]

대상 상품군	법 및 시행령(안)	세부 상품	비 고
국내상장주식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코스피·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 국내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DR 은 제외	리스 등은 포함
국내 주식형 펀드 (ETF 포함)  ※ 모자형·재간접형· 합성형 펀드 제외	펀드 설정·설립일부터 1 개월 경과하고, 집합 투자재산의 100 분의 80 이상을 국내 상장주 식에 투자하는 펀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 는 국내주식형펀드 ① 펀드 설정·설립일부 터 1 개월 경과 ② 3 개월(또는 설정일 부터) 평잔기준 집합 투자재산 중 국내주식 등 비중 80% 이상 ③ 집합투자재산 중 국 외상장주식 또는 국외 상장주식 대체자산이 편입되지 않을 것	① 집합투자재산에 편 입된 국내 주식형 ETF 는 국내 주식으로 분류 하지 않음  ② 레포(REPO) 등 운용 조건 제한 없음  ③ 집합투자재산은 총 자산 기준
예탁금	예탁금		

별첨. 2 [ RIA 외 계좌에서 투자 시 RIA 세제혜택 차감 상품 ]

대상 상품군	법 및 시행령(안)	세부 상품	비고	
<p>국외상장주식</p>	<p>①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증권시장 상장주식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DR포함)</p>	<p>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DR·ETF·ETN</p>	<p>개인이 직접 투자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p>	
<p>국외 상장주식 대체자산</p>	<p>국내 설정·발행 해외투자 ETF, ETN</p>	<p>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지수(변동성 지수 포함)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국내 설정·발행 ETF와 ETN</p>	<p>해외상품*을 기초로 수익률이 결정되며,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ETN</p> <p>*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주식, 채권, 원유 등 상품, 통화 등 또는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 등)이나 그 가격을 기초로 만들어진 지수</p>	<p>기초자산은 제한없이 모든 해외자산이며, 편입비율 요건 없음</p>
<p>국내 설정·설립 해외주식형 펀드</p> <p>※모자형·재간접형·합성형 펀드 제외</p>	<p>펀드 설정·설립일부 터 1개월 경과하고,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이상을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p>	<p>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주식형 펀드</p> <p>①펀드 설정·설립일부 터 1개월 경과 ②3개월(또는 설정일부 터) 평잔기준 집합 투자재산 중 해외주식 등* 비중 60% 이상</p> <p>*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DR·ETF·ETN 포함</p>	<p>해외주식 등에 포함되는 자산 기준은 개인이 직접 투자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p>	